

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지출보고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
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등은 지출보고서를 꼭! 작성바랍니다!

· 지출보고서 제도란?

약사·한약사·의료인·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을 작성하고,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

* 작성·보관 주체 :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제조·수입·판매·임대업자

· 지출보고서 작성내용

①견본품 제공, ②학술대회 지원, ③임상시험 지원, ④제품설명회, ⑤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, ⑥시판 후 조사, ⑦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(의료기기만 해당)

영업을 위탁한 경우

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영업을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·수입·판매·임대업자에게 지출보고서 작성·보관 의무가 있음





2018~2019년 지출보고서 확인을 꼭 요청하세요.



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시 꼭! 확인바랍니다!

- 거래를 위해 방문하는 영업사원의 정확한 소속
* 제약사, 의약품도매상, 위탁영업자, 의료기기사, 의료기기 판매·임대업자
- 지출보고서에 작성된 의사·약사 등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
* 해당 업체를 통해 확인 가능

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.

지출보고서 제도란?

약사·한약사·의료인·의료기관 개설자
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
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하고,
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

작성·보관 주체 :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법 상
의료기기 제조·수입·판매·임대업자

